

# '방치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책임의 승계'

문장욱 과장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방치폐기물”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로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방치폐기물 발생사유로는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로인해 폐기물처리업체도 크나큰 타격을 받아 폐기물관련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모두가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가 빈발하였으며, 특히 일부 폐기물처리업체는 자금확보를 위해 때로는 처리능력을 고려치 않고 폐기물을 마구 수탁받은 후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다가 부도가 나서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위 사례로 인한 공제조합 가입된 업체의 방치폐기물발생량은 약 25만톤이며, 환경부에서 고시된 방치폐기물처리비용 적용시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공제조합 및 소속조합원사의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예방과 관련하여 조합원사의 지도점검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주체로서 한 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과 행정청은 방치폐기물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처리



책임이 있는 조합의 방치폐기물 예방업무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공적기능부여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관련 법상 ‘방치폐기물의 처리승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5항 후단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방치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 및 허가부지를 특별승계한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근거를 토대로한 사법적인 ‘방치폐기물승계’ 관련 판결내용에서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 근거로한 판결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방치폐기물승계’와 관련한 환경부의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행정청과 사업장, 사업장을 임대해준 토지주·부지특별승계자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의가 요구 된다.